

공동주택 발주 입찰가격 상한 자문역에 해당관련 알림

1. 안녕하십니까? 날씨가 많이 추워져 건강관리에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.

2. 원가분석사 또는 원가분석사가 소속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「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」상의 입찰가격 상한 공고를 위한 자문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

“원가분석사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원가계산용역기관이 동 지침 상 입찰가격 상한 공고를 위한 자문역”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.

3. 이와 같은 유권해석에 따라 원가계산용역기관 및 그 소속 원가분석사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해보며, 기관 대표 여러분께서도 공동주택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울러 입찰가격 작성 등 소속 직원인 원가분석사가 자문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.

4. 우리 분석사회에서는 신년 초에 입찰가격 산출방법 등 「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」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 전문가를 초빙하여 공인원가분석사인 회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교육일정이 통보될 경우 소속 직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,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
사단
법인

한국원가분석사회

회장 이 중 특

